

## 보도참고자료



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
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2.2.28.(월)
----	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장 최 치 연(02-2100-1685)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(공 석)(044-215-4230)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장 최 진 규(044-215-8580)

## 제 목 :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「조세특례 제한법」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.

- □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**자신의 소득**으로 **자산을 형성**하고 **관리** 하도록 **지원**함으로써 청년의 **조속한 자립을** 돕기 위한 「**조세** 특례제한법」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,
  -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**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** 하게 **일정한** 기준\*을 갖춘 거주자이면서,
    - \*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(국적 무관)
  -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□ 2.21~2.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**외국인 거주자의 비중**은 전체 가입자의 **약 0.05% 수준**(잠정)입니다.
  - \* 우리나라 만 20~34세 주민등록인구(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) 중 외국인 비중은 6.6%('20년 기준)

- □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.
  -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## 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